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496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윤

담당변호사 차상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경규연, 조범수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최진녕, 이태형

변론 종결2023. 5. 3.

판결 선고2023. 6. 14.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37,513,704원 및 그중 116,515,759원에 대하여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 (1) 피고 C는 원고에게, ① 2016. 3. 14.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6. 9. 13. 이자 월 150만 원(이율로 환산시 연 36%에 해당한다)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② 2016. 9. 5.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6. 12. 5. 이자 월 3%로 하는 차용증을, ③ 2016. 9. 23.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7. 3. 20. 이자 월 3%(월 150만 원)로 하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 (2) 피고 C는 2017. 4. 27.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합한 1억 3,000만 원을 2017. 4. 27.부터 2017. 8. 27.까지 4개월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3)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등

- (1) 피고 C는 2017. 3. 7.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D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인수 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피고 B으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3. 16.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1.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을 2억 1,5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8. 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7. 11. 1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 C의 무자력

2017. 3. 7. 당시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D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채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3,406,460원의 건강보험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 4, 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원금에, 나머지는 이자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민법 제479조에 따른 순서와 다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어야 한다.1) 그리고 위 각 차용증 등에 의한 이율인 월 3%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다만, 원고가 2021. 7. 1.부터는 연 20%의 이자만을 청구하므로 그때부터는 연 20%)를 초과하므로, 피고 C가 지급한 돈 중 이를 초과하는 돈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C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을 별지 총당액계산표와 같이 원리금에 충당하면, 2022. 7. 5. 기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원금은 116,515,759원이 되고, 이자는 126,279,956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금전채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채권 또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채권 부분과 이자채권 내지 지연손해금채권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100224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7,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25%, 2021. 7. 1.부터 2022. 7. 5.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120,997,945원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37,513,704원(= 116,515,759원 + 120,997,945원) 및 그 중 116,515,759원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다음 날인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늦어도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2017. 4. 27.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가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의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장래의 불확실한 예상수입을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2017. 3. 7. 당시 그로 인한 채권이나 자동차 등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합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가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사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그리고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시가 3억 5,000만 원²⁾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3,406,460원,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15,600,000원을 뺀 액수는 130,993,54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3) 보다 더 적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130,993,54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억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춘수

별지

-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 3)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